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
평 창 군 의 회　의 견 청 취 안

의안 번호	252

제출년월일 : 2020. 6.
제　출　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와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를 구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및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, 경관 회복으로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로 국가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에 부응

○ 2019년 12월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17조에 따라 수립된『2028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』에 의한 평창읍의 활성화 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 해결 및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으로 도시재생 방향을 결정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39조 제1항 제11호 및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0조 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

· 사 업 명 :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

· 위　　치 : 평창읍 하리 145-3번지 일원 (활성화계획구역)

· 사업유형 : 일반근린형

· 사업면적 : 140,696㎡

· 단위사업내용

- 지역커뮤니티 활력사업
- 골목상권 활력사업
- 주거환경 활력사업
- 주민역량강화사업
- 디자인개선사업

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개요

1. 계획의 목적

○ 노후불량 주택정비, 담장, 지붕, 공가정비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녹지와 휴게공간 확보, 조명설치, 바닥정비, 간판정비, 등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어메티니 향상

○ 평창올림픽 시장과 연계하여 시장상가 정비, 보행 환경개선, 조명개선 등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 등 인구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

○ 주민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열린 공간 확보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함과 동시에 도시재생대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 마련

2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
○ 위　　치 : 평창읍 하리 145-3번지 일원 (활성화계획구역)
○ 사업유형 : 일반근린형
○ 사업면적 : 140,696㎡

3. 사업계획

- 평창올림픽 시장길과 주변가로에서 피어나는 도시의 경쟁력 향상
-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공간 확보와 마을경제 재구축
-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골목 주차시스템 정리
- 여성과 유아, 어르신과 청년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와 생활일자리 창출

4. 사업비용

(단위 : 억원)

합계	도시재생재정보조			기타		
	국비	지방비		공기업 투자	민간투자	기금
		시도비	시군구비			
211.34	100	-	84.14	-	-	27.20

5. 단위사업내용

지역 커뮤니티 활력	① '꿈다은'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	• 작은영화관, 키즈카페, 엑티비티 시니어 공간 등 문화 및 복지 활동 프로그램 지원할 공간 조성
골목상권 활력	② 골목상권 활성화 거리조성	•간판정비사업 (시장 인근 골목길 등) •외부환경개선사업 (건물의 입면개선, 통합디자인적용 등)
	③ 'Happy House' 시장호텔 조성	•고령층과 일자리를 찾는 다문화 가족 또는 주민이 함께 구성 운영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체계 구축
	④ 평창 유튜브 사업	• 도시재생 시너지 유발할 수 있도록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운영
	⑤ 'Happy Together' 다문화 축제	•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공유하는 다문화 음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시장 활성화를 유도
주거환경 활력	⑥ 노후건축물 정비	•생활불편 해소 및 미관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, 집수리 시 임시거주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복합센터 등 공유공간 활용
	⑦ 쌈지공원 조성	• 나대지들을 국공유지와 함께 발굴하여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 조성
	⑧ 주차장 조성	•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주차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 •투수성포장, 수목설치 등을 통한 친환경 주차장 계획
	⑨ 스마트 도시재생	•스마트 신호등·스마트 보안등, CCTV 설치 •안심거리를 위한 범죄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
주민 역량강화	⑩ 도시재생대학	•마을공동체 및 주민 리더 양성 • 활동가 및 전문가를 발굴하여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기반 구축
	⑪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	•주민공감대 형성 및 공동체 문화 확대하고 지속적인 주민과 소통 및 교류 등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내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성
	⑫ 주민공모 프로그램	•주민제안사업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•공동체 중심의 사업추진체계구축으로 창의적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
디자인 개선사업	⑬ 가로환경정비	•골목환경 개선 및 소통가로 조성하는 등 지역 가로환경정비을 통한 걷고싶은거리, 보고싶은 거리 조성
	⑭ 경관디자인사업	•담장없는마을, 별빛고운 마을 등 특화마을 조성하기 •테마가로 조성으로 연계구도 확보 •통합형경관디자인 요소 도입으로 지역 매력도 제고

6. 활성화계획 수립·변경 절차

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배포
(국토교통부장관)

⇩

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발주·착수
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)

⇩

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마련
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)

⇩

공청회 개최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)
(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)

⇩

지방의회 의견 수렴
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)

⇩

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승인신청
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 →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→ 국토교통부장관)

⇩

사업타당성 평가 (前 관문심사)
(국토교통부장관)

⇩

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(국가지원 사항)
(국무총리)

⇩

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
(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)

⇩

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(활성화계획)
(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)

⇩

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
(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)

⇩

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·열람
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)

7. 추진상황

○ 2020. 1. 13.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

○ 2020. 1. 23.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

○ 2020. 1. 29.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설명회

○ 2020. 2. 18. 2020 평창읍 도시재생대학 개강

○ 2020. 5. 18.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

8. 향후계획

○ 2020. 6. 5.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공청회

○ 2020. 6. 평창군 의회 의견 청취

○ 2020. 6. 군기본계획위원회 의견 청취

○ 2020. 7.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공모사업 신청

9. 기대효과

○ 도시재생활성화의 사업성과에 따라서 주민협의체가 주민주도로 자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발적 개선, 낙후지역에 대한투자 확대,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

○ 단계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주도사업 활성화

○ 평창읍의 경관디자인과 연계한 가로환경개선 등 주요 거점 가로환경계선과 주민제안사업을 통하여 주민 생활편의시설 증대

관계법령 발췌

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20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) 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**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**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**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**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**,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**